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
심사보고

1. 청원일자 및 청원자

가. 일자 : 2002. 11. 12(2002-2)

나. 제출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노영우, 김범추, 곽동철)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

2. 심사일정

가. 심사일 : 제20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2.4)

나. 주요내용 : 검토보고 및 심사의결

3. 소개의원 및 출석공무원

가. 소개 : 김문천의원

나. 출석자 : 사회복지과장 임현, 총무과장 우혁성

4. 청원요지

가. 청원취지

- 현재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이하 장애인이라 함) 등의 생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공공시설 등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해준 실적이 크게 저조한 한 바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허가 및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판기 등을 허가·위탁시 1개월전에 자치단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등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고하며
- 계약시 장애인등이 우선계약 대상자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두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보장하고
- 설치 허가·위탁시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도록 하며
-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계약의 공정성을 기함과
- 직접운영의 의무위반, 관리상의 해태, 위탁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 제도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과정 및 위탁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임.

5.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임석규

- 관련법의 조례제정의 필요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일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
 -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등)
- 각 시·도의 동 조례안 제정 현황
 - 광주광역시가 '92년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95년에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이후 활발하게 동조례의 제정함을 볼 수 있으며(시·도별 제정안 : 별첨)

○ 각 시·도의 동 조례안 입법발의 현황

-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한 시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있고
- 집행부에서 발의한 곳은 부산광역시외 9개 시도가 있음.

○ 현재 동 조례안을 추진중이거나 제정하지 않은 곳

- 대전광역시, 충남, 전남, 경남, 제주도 등 5개소

○ 우리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유관기관(청주·충주의료원)의 11월 현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

- 매점이 6개소로 전부 일반인이 운영
- 자동판매기는 총 67대로 이중 장애인이 4대, 일반인이 63대를 각각 운영(위탁 및 자체)하고 있음.

○ 상기에서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본 바

- 동 조례안의 제정은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정안을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 동 조례안 제정 입안시 집행부에서는
 - 장애인과 일반인(단체포함)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시 배분비율과(양자 50% 보장)
 -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시 우선순위의 대상자 내역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 ②미과세대상자, ③저소득자, ④중증장애인, ⑤부양가족이 많은자 등)
 - 적용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①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 장애인, ②노인복지법제21조에의한 65세이상 노인, ③모자복지법제4조에의한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 등)

- 매점설치의 면적(m^2)과 계약 보장기간(3년)
- 의무이행사항을 해태 할 경우의 제재사항 명시 등
- 입안 단계부터 관련단체의 의견과 장애인등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만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우혁성 총무과장 : 금번 청원된 조례제정의 취지에는 찬성
 - 본청에는 18대가 있는데 구내식당 7대, 새마을금고 7, 장애인 4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
 -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이익금은 6,900만원 정도로 공무원들이 중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음.
 - 장애인들에게 50%정도까지 대여할 경우에 구내식당 식비 인상과 도청새마을금고 운영이 위축 됨.
- 임현 사회복지과장
 - 구내식당 및 새마을금고의 식비단가 및 재정운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종합 검토하여 제정도록 하겠음.
- 김문천 의원
 - 전주시가 대표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음.
 - 우리 생활틈새를 이용하여 작으나마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됨.
- 이범윤 의원
 - 장애인 및 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나, 즉 허가 받은 자가 하고 있나, 정확히 파악하여 제정시 검토하겠다.

○ 조계숙의원

- 다른 시도는 이미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조속히 제정토록 하겠다.

○ 이범윤의원

- 각 시도는 장애인에게 몇 대를 주고 있는가 30%에서 50%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대한도로 확보하여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 이기동의원

- 각 시도가 이미 제정하였는데 시도별로 조례에서 장애인에게 배분한 비율을 참고하여 청원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마도 그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저항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니 적극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 동 청원건의 조례제정은 도지사가 처리하기로 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 의견서

의 견 서

제 목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의견
1. 청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판기 등을 허가·위탁시 1개월전에 자치단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등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공고 ○ 계약시 장애인등이 우선계약 대상자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두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보장하고 ○ 설치 허가·위탁시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 ○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계약의 공정성을 기함 ○ 직접운영의 의무위반, 관리상의 해태, 위탁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도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과정 및 위탁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입. 	
2. 심사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 사무용품·신문 등 일일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 •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u>장애인복지법 제38조 등</u>) ○ 각 시·도의 동 조례안 제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가 '92년에 동조례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 와 부산광역시가 '95년에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이후 활발하게 동 조례의 제정함을 볼 수 있음. 	

○ 동 조례안의 입법발의 현황

-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한 시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있고
- 집행부에서 발의한 곳은 부산광역시외 9개 시도가 있음.

○ 현재 동 조례안을 추진중이거나 제정하지 않은 곳

- 대전광역시, 충남, 전남, 경남, 제주도 등 5개소.

○ 우리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유관기관(청주·충주의료원)의 11월 현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은

- 매점이 6개소로 전부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 자동판매기는 총 67대로 이중 장애인이 4대, 일반인이 63대를 각각 운영(위탁 및 자체)하고 있음.

▶ 상기에서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본 바

- 동 조례안의 제정은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정안을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 아울러 동 조례안 제정 입안시 집행부에서는

- 장애인과 일반인(단체포함)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시 배분비율과(양자 50% 보장)
-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시 우선순위의 대상자 내역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②미과세대상자, ③저소득자, ④중증장애인, ⑤부양가족이 많은자 등)
- 적용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와
(①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 장애자, ②노인복지법제21조에의한 65세이상 노인, ③모자복지법제4조에의한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 등)
- 매점설치의 면적(m^2)과 계약 보장기간(3년)
- 의무이행사항을 해태 할 경우의 제재사항 명시 등

▶ 입안 단계부터 관련단체의 의견과 장애인등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만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